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29호 2019. 2. 28.(목)

고 시

제2019 - 2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1
제2019 - 2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5	
제2019 - 25호	남해군관리계획(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9	

공 고

제2019 - 198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4	
제2019 - 212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	
제2019 - 222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5
제2019 - 225호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공고 · 32	
제2019 - 229호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3
제2019 - 233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안) 공람 · 공고	44
제2019 - 256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49
제2019 - 265호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57
제2019 - 269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1	
제2019 - 27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67	
제2019 - 27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68	

훈 령

제2019 - 321호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9
--------------	--------------------------------	----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2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남해군 서면 노구리 산99-2번지 일원
- 면 적 : 693,400m²
- ※세부편입토지조서는 <붙임1>참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망운산 정상부에 자생하는 철쭉군락지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립하고자함

3.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기타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4.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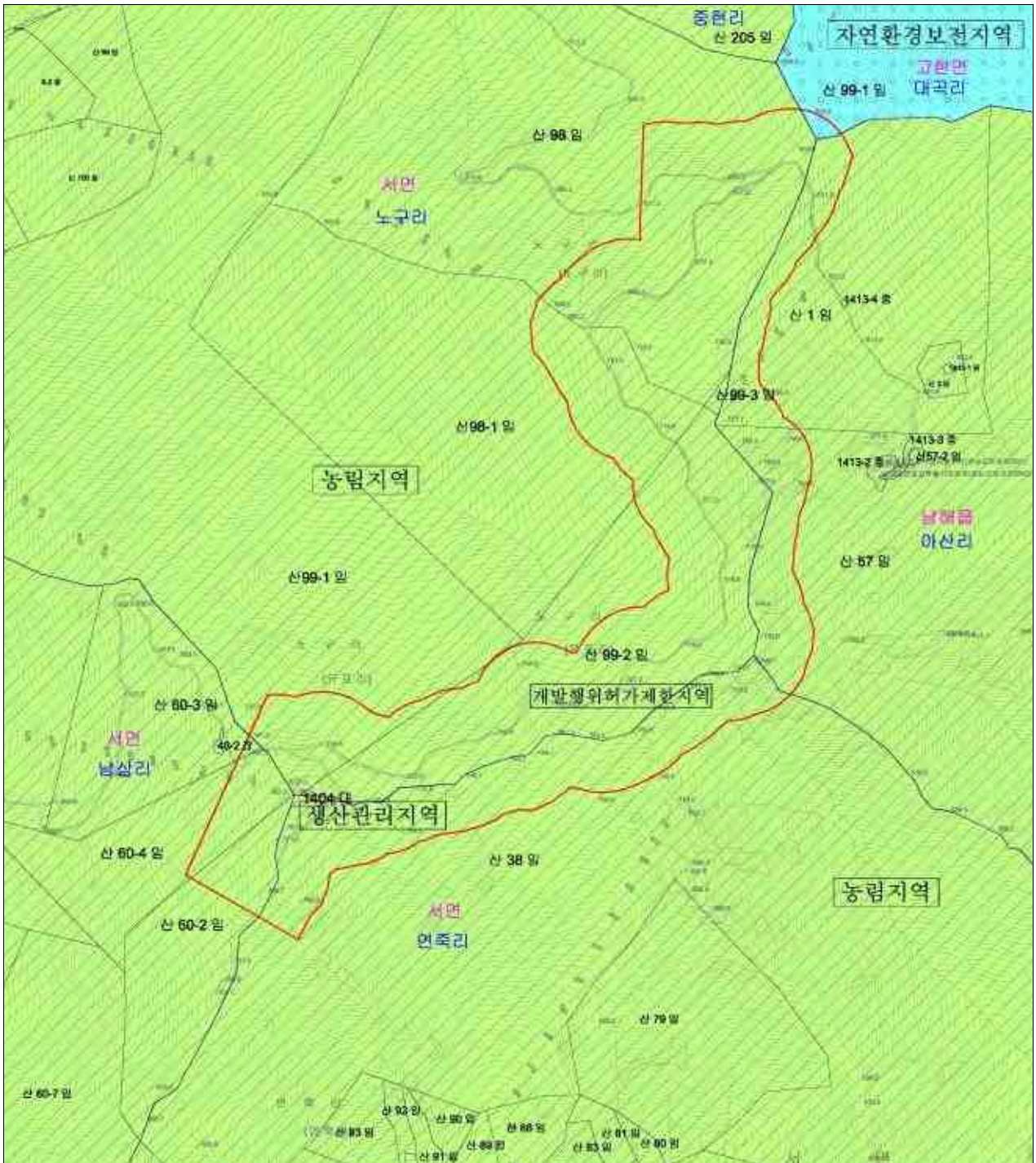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1차례 2년 연장 가능)

5. 기타 :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하고 열람합니다.

■ 붙임1. 세부편입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계					6,920,016	693,400			
1	서면 남상리	산60	2	임	91,438	18,628	남상부락	남해군 서면 남상리	
2	서면 남상리	산60	3	임	113,328	860	중리마을회	남해군 서면 남상리 843	
3	서면 남상리	산60	4	임	93,025	20,436	남상부락	남해군 서면 남상리	
4	서면 노구리	산98		임	514,887	156,117	노구마을회	남해군 서면 노구리 684	
5	서면 노구리	산98	1	임	402,501	55,509	유포마을회	남해군 서면 노구리 1301-4	
6	서면 노구리	산99	1	임	932,926	35,365	심원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111 124동 802호 (한남동 한남더힐)	(305465/932926)
							심진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405호 (한남동, 힐탑트레져2동)	(305465/932926)
							심지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405호 (한남동, 힐탑트레져2동)	(144469/932926)
							심승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111 124동 802호(한남동 한남더힐)	(144469/932926)
							김승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13, 813호(삼산동,에스프라자)	(33058/932926)
7	서면 노구리	산99	2	임	233,186	197,005	유포마을회	남해군 서면 노구리 1301-4	
8	서면 노구리	산99	3	임	1,260	1,260	노구마을회	남해군 서면 노구리 684	
9	서면 연죽리	산38		임	1,719,104	118,554	조영욱	인천시 북구 십정동 329	
10	서면 연죽리	1404		대	1,651	1,651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1	남해읍 아산리	산1		임	245,807	37,992	화방사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	
12	남해읍 아산리	산57		임	1,241,160	47,889	남해군	공	
13	고현면 대곡리	산99	1	임	1,329,743	2,134	대한불교 조계종 화방사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	

■ 붙임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해군 고시 제2019 - 2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88,905.7	증)650	579,489,55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7,341.7	증)650	357,677,991.7	61.72		
도 시 지 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 거 지 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 업 지 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 리 지 역	소계	136,569,878.7	증)650	136,570,528.7	23.56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	-	53,325,240	9.20		
	계획관리지역	36,008,586.6	증)650	36,009,236.6	6.21		
농림지역		153,977,522.0	-	153,977,522.0	26.57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주)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2018.7.5.)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남해군 고시 제2018-109호(2018.07.12.)로 고시된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	계획 관리지역	650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설리유원지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대	92,503	증) 650	93,153	남해군 고시 2018-47 (18.04.05.)	계획 관리 지역

나. 유원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설리 유원지	○ 경미한 변경 - 기정 : 92,503㎡ - 변경 : 93,153㎡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 설리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시설 면적 변경

다.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비 고
40% 이하	100% 이하	65m 이하	

남 해 군 공 보

(8)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3.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92,503	93,153	증) 650	100.0	
휴양시설	20,717	17,516	감) 3,201	18.8	
특수시설	8,663	13,143	증) 4,480	14.1	
관리시설	19,906	11,855	감) 8,051	12.7	
편익시설	1,035	1,222	증) 187	1.3	
녹지시설	42,182	49,417	증) 7,235	53.1	

나. 시설별 조서

시설명	시설번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92,503	93,153	22,265	20,454	
휴양시설	-	-	20,717	17,516	21,616	12,300	
숙박시설(타 위)	1	1	3,787	5,624	13,638	7,857	
숙박시설(빌리지1)	2	2	1,640	4,438	1,056	1,473	
숙박시설(빌리지2)	3	3	8,705	4,307	4,258	1,451	
숙박시설(빌리지3)	4	4	6,585	2,210	2,664	1,025	
숙박시설(빌리지4)	-	5	-	937	-	494	
특수시설	-	-	8,663	13,143	17	5,142	
광장1	5	6	3,504	5,860	-	4,149	
광장2	6	7	2,231	3,911	-	731	
광장3	7	8	1,429	3,372	-	262	
광장4	8	-	1,499	-	17	-	
관리시설	-	-	19,906	11,855	44	791	
도로	9	9	11,663	10,751	22	-	
주차장	10	10	7,193	221	-	-	
가스저장소	11	-	1,050	-	22	-	
기타	-	11	-	883	-	791	
편익시설	-	-	1,035	1,222	584	2,221	
카페동	12	12	682	795	480	2,155	
전망대	13	13	353	427	104	66	
녹지시설	-	-	42,182	49,417	-	-	
원형녹지	14	14	24,631	24,191	-	-	
조성녹지	15	15	17,551	25,226	-	-	

남해군 고시 제2019 - 25호

남해군관리계획(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군계획시설(설리유원지)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설리유원지)사업
 - 명 칭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92,503㎡ → 93,153㎡(증: 650㎡)
 - 규 모

남 해 군 공 보

(10)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구 분	면적(m ²)									비율 (%)
	당초			변경			증감			
	총편입	1단계 (2018년~2020년)	2단계 (2020년)	총편입	1단계 (2018년~2020년)	2단계 (2020년)	총편입	1단계 (2018년~2020년)	2단계 (2020년)	
합 계	92,503	67,872	24,631	93,153	68,962	24,191	증) 650	증)1,090	감) 440	100.0
휴양시설	20,717	20,717	-	17,516	17,516	-	감)3,201	감)3,201	-	18.8
특수시설	8,663	8,663	-	13,143	13,143	-	증)4,480	증)4,480	-	14.1
관리시설	19,906	19,906	-	11,855	11,855	-	감)8,051	감)8,051	-	12.7
편익시설	1,035	1,035	-	1,222	1,222	-	증) 187	증) 187	-	1.3
녹지시설	42,182	17,551	24,631	49,417	25,226	24,191	증)7,235	증)7,675	감) 440	53.1

※ 2단계 부지(24,191m²) 원형녹지로 존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당초 -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최 주 영
 변경 - (주)대명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 주 영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변경 없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총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1단계	2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94,049	93,153	68,962	24,191	-	-	-	-	-
1	송정리	881	전	6,152	6,152	6,152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	송정리	884	전	172	172	172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3	송정리	885	전	853	853	470	383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4	송정리	886	전	1,352	1,352	1,039	313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5	송정리	887	전	367	367	367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6	송정리	961	전	542	542		542	김영찬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23-4. 1동 407호	-	-	-
7	송정리	1474	임	314	314	314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8	송정리	358-2	임	8,176	8,176	748	7,428	한국에스알 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9	송정리	358-4	임	235	235		235	박세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15, 111동 1701호	-	-	-
10	송정리	358-7	임	34	34	34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1	송정리	358-8	임	47	47	47		한국에스알 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12	송정리	359-2	임	2,288	2,288	2,288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3	송정리	359-7	임	64	64		64	남해군	-	-	-	-
14	송정리	359-17	임	101	101		101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5	송정리	359-22	임	771	771	771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6	송정리	359-23	임	277	277	277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7	송정리	359-24	임	120	120	120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8	송정리	359-25	임	1,210	352	352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9	송정리	360-10	임	2,005	2,005	2,005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0	송정리	360-20	임	520	482		482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1	송정리	361	임	63,915	63,915	49,579	14,336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2	송정리	361-4	임	561	561	561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3	송정리	362-7	임	279	279	279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4	송정리	362-8	임	378	378	378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5	송정리	362-9	임	187	187	187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6	송정리	363	임	3,129	3,129	2,822	307	대명호텔엔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남 해 군 공 보

(12)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1단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면적	금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 계				92,587	68,962	-	-	-	-	-
1	송정리	881	전	6,152	6,15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	송정리	884	전	172	17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3	송정리	885	전	853	470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4	송정리	886	전	1,352	1,039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5	송정리	887	전	367	36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6	송정리	1474	임	314	314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7	송정리	산358-2	임	8,176	748	한국에스알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8	송정리	산358-7	임	34	34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9	송정리	산358-8	임	47	47	한국에스알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10	송정리	산359-2	임	2,288	2,288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1	송정리	산359-22	임	771	771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2	송정리	산359-23	임	277	27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3	송정리	산359-24	임	120	120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4	송정리	산359-25	임	1,210	35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5	송정리	산360-10	임	2,005	2,005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6	송정리	산361	임	63,915	49,579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7	송정리	산361-4	임	561	561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8	송정리	산362-7	임	279	279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9	송정리	산362-8	임	378	378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0	송정리	산362-9	임	187	18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1	송정리	산363	임	3,129	2,82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단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면적	2단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78,887	24,191	-	-	-	-	-
1	송정리	885	전	853	383	대명호텔앤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	송정리	886	전	1,352	313	대명호텔앤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3	송정리	961	전	542	542	김영찬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23-4. 1동 407호	-	-	-
4	송정리	산 358-2	임	8,176	7,428	한국에스알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5	송정리	산 358-4	임	235	235	박세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15, 111동 1701호	-	-	-
6	송정리	산 359-7	임	64	64	남해군	-	-	-	-
7	송정리	산 359-17	임	101	101	대명호텔앤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8	송정리	산 360-20	임	520	482	대명호텔앤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9	송정리	산 361	임	63,915	14,336	대명호텔앤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0	송정리	산 363	임	3,129	307	대명호텔앤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198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기금 운용, 결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안 제3조~제8조)

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지역주민 감시 (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2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52429, 남해군·읍 에코파크길 87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남해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7~3278 팩스 055-860-3707
이메일 kimyk77@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시설팀(☎860-32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남해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4. 군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③ 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해군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7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기금의 운용계획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원
2. 위촉직 : 주민대표, 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전문가
-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제6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 나. 그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 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수당은 해당 월의 말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매월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
-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212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조례 목적에 맞춰 전면 수정(제1조)
- 조례 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신설(제2조)
- 마을대표자 책무조항 신설(제3조)
-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범위 등(제4조~제6조)
- 사업신청, 사업심의, 사업 완료보고 등(제7조~제9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8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948, 팩스 860-3982, e-mail doeun646@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촌활력과 농촌자원팀(860-39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를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로 한다.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3.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5. “부식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이하 “마을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기간) 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가스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카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222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8. 12. 24.) 및 '19.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19. 2월)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현재의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을 지속하고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과 기간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차세 감면 대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규정

- 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 2022년 6월 30일까지(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 3년간)
- 경과규정 마련 : 일몰이후에도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지속

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및 기간 규정

- 1) 경감율 : 100분의 50
- 2) 경감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055-860-3172, 팩스 055-860-3705, 이메일 lee690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조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조 제1호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를 “1.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 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제목개정 2010. 12. 27.]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

제00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00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조례로 정하는 읍"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가목(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 : 또는 ‘나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 또는 ‘100분의 40’)
2.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22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경상남도 산림 환경 연구원장(유재원)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 로 386 산림환경연구원
	소하천명	옥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125-6		
	면적	20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19. 2. 15. ~ 2019. 4. 30.		
	목적 및 사유	남해창선옥천지구 전 사방사업	계류보	

남해군 공고 제2019-229호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감사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
- 규칙의 근거법령을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으로 변경하여 규칙 시행의 근거 명확화
- 추가된 근거법령에 따른 조문 내용, 용어 등 수정

- 법령용어 순화 및 오타자 등 정비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으로 변경

- 감사대상기관 적용범위 변경(추가) (안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과”를 추가

- 감사종류의 구분 세분화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에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

- 상위 근거법령에 따른 조문내용, 용어 등 수정(안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 법령용어 순화 및 오타자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3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전화 055-860-3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과(재무감사에 한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12월 말” 을 “12월 31일” 로, “1월 말일” 을 “1월 31일”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감사관 편성 등)” 을 “(감사반 편성 등)”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 일정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중 “수감기관” 을 “감사대상기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서류·장표” 를 “관계서류·장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감기관” 을 “감사대상기관”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감기관” 을 각각 “감사대상기관”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감사관의 유의사항)” 을 “(감사반의 유의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를 “감사대상기관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실은” 을 “사실을”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감기관” 을 “감사대상기관”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선 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은” 을 “등에 대하여”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수감기관” 을 “감사대상기관” 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감사결과 보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수감기관” 을 각각 “감사대상기관”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 을 “(재심의신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를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을 제기” 를 “재심의를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이의신청” 을 각각 “재심의신청” 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30일” 을 “2개월” 로 한다.

제17조 중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으로 한다.

제20조 중 “수감기관” 을 “감사대상기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 ----- -----.</p>
<p>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p> <p>1. (생략)</p> <p><신설></p> <p>2. 3.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 “감사대상기관“----- ----- -----.</p> <p>1. (현행과 같음)</p> <p>2. 의회사무과(재무감사에 한함)</p> <p>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p>	<p>제3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p> <p>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p> <p>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p>

<p>② “<u>종합감사</u>”는 수감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 주기는 3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u>특정감사</u>”는 수감기관의 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 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와 민원 등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p> <p>④ “<u>기강감사</u>”는 수감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p>	<p>4. <u>성과감사</u>: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p> <p>5. <u>복무감사</u>: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p> <p>② <u>종합감사</u>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p>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실시연도 1월 말일까지 감사받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p>	<p>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12월 31일----- -----1월 31일-----.</p>
<p>제5조(감사관 편성 등) ① ~ ③ (생략)</p>	<p>제5조(감사관 편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감사사항, 감사 일정 등을 수감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p>	<p>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 일정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서면</p>

남 해 군 공 보

(40)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p><u>한다. 다만, 특정감사 또는 기강감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통지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u></p>	<p><u>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반원은 <u>수감기관</u>에 대해서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p> <p>1. <u>관계서류·장표 및 물품</u> 등의 제출</p> <p>2. ~ 4. (생략)</p> <p>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u>수감기관</u> 이외의 관계기관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 <u>감사대상기관</u>-----</p> <p>-----.</p> <p>1. <u>관계서류·장부</u>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u>감사대상기관</u> -----</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감사의 방법) ① (생략)</p> <p>② <u>실지감사</u>는 감사반이 <u>수감기관</u>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u>서면감사</u>는 감사반이 <u>수감기관</u>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p>	<p>제8조(감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감사대상기관</u> -----</p> <p>-----</p> <p>--- <u>감사대상기관</u>-----</p> <p>-----.</p>
<p>제9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는 <u>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u>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중대한 <u>사실</u>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 <u>감사대상기관의 일반적인 근무시간</u>에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사실</u>을 -----</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주민의견 등 수렴) ① 군수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u>수감기관</u>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주민·단체로부터</p>	<p>제10조(주민의견 등 수렴) ① -----</p> <p>----- <u>감사대상기관</u>-----</p> <p>-----</p>

남 해 군 공 보

(42)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p>을 지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u>수감기관</u>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u>수감기관</u>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 -----.</p> <p>② ----- <u>감사대상기관</u>----- ----- ----- -----.</p> <p>③ <u>감사대상기관</u>----- ----- -----.</p>
<p>제16조(<u>이의신청 등</u>)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u>30일</u> 이내에 <u>이의신청</u>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u>이의신청</u>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u>이의신청</u>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p> <p>④ 군수가 <u>이의신청</u>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30일</u>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6조(<u>재심의신청 등</u>) ① ----- ----- ----- - <u>1개월</u> 이내에 <u>재심</u>의를 신청----- -----.</p> <p>② <u>재심</u>의를 신청----- -----.</p> <p>③ ----- <u>재심</u>의신청----- ----- ----- -----.</p> <p>④ ----- <u>재심</u>의신청----- ----- <u>2개월</u> ----- -----.</p>
<p>제17조(<u>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u>)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은 「<u>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7조(<u>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u>)----- ----- 「<u>지방공무원징계규칙</u>」----- -----.</p>

<p>1. ~ 4. (생 략) ② (생 략)</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감사공무원의 증표)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증을 <u>수감기관</u>에 제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감사공무원의증표) ----- ----- ----- --- <u>감사대상기관</u>-----.</p>

남해군 공고 제2019 - 233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 공람 · 공고

남해군 서면 노구리 일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수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남 해 군 수

-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노구상수원보호구역

- 2. 지정내용

상수원보호구역명	면적(m ²)	지정범위	비고
노구상수원보호구역	2,573,000	노구댐 상류 1.83km 집수구역	서면 노구리 1번지 일원

- 3. 편입 필지 조서 : 별첨

4. 상수원보호구역안 금지행위 및 행위제한

가. 금지행위

-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재축, 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3) 토지의 굴착·성토·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공람기간 : 게시일 익일로부터 14일간

6. 관계도서 열람장소

가.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055-860-3324)

7. 의견제출방법 : 서면제출

가. 지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기재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노구상수원보호구역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 치	분번	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주 소	비고
계					2,694,532	2,573,000				
1	서면 노구리	1		임	215	215	농림지역	이*용	고현면 대곡리 286	
2	서면 노구리	2		임	294	294	농림지역	이*용	고현면 대곡리 286	
3	서면 노구리	3		임	304	304	농림지역	이*용	고현면 대곡리 286	
4	서면 노구리	4		답	493	493	보전관리	양*만	서면 노구리 1355-2	
5	서면 노구리	5		답	261	261	보전관리	남해군		
6	서면 노구리	6		답	836	836	보전관리	남해군		
7	서면 노구리	7		답	179	179	보전관리	양*만	서면 노구리 1355-2	
8	서면 노구리	8		답	6,850	6,850	보전관리	남해군		
9	서면 노구리	8	1	묘	76	76	보전관리	김*만	노구리 1227	
10	서면 노구리	8	2	임	27,986	14,370	보전관리	윤*녀	노구리 1227	
						13,616	농림지역			
11	서면 노구리	8	3	임	80	80	보전관리	윤*녀	노구리 1227	
12	서면 노구리	8	4	임	8,549	8,549	보전관리	윤*녀	노구리 1227	
13	서면 노구리	9		대	374	374	보전관리	남해군		
14	서면 노구리	10		답	2,106	2,106	보전관리	박*은	하동군 악양면 미정리 356	
15	서면 노구리	10	1	임	413	413	보전관리	김*수	노구리 1227	
16	서면 노구리	11		임	162	162	보전관리	정*영	노구리 54	
17	서면 노구리	12		답	33	33	보전관리	남*재선	노구리 1068	
18	서면 노구리	13		답	106	106	보전관리	남*재선	노구리 1068	
19	서면 노구리	14		답	76	76	보전관리	정*수	안양시 안양동 688-17	
20	서면 노구리	15		답	110	110	보전관리	곽*수		
21	서면 노구리	15	1	도	88	88	보전관리	남해군		
22	서면 노구리	16		답	2,569	2,569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	서면 노구리	16	1	도	250	250	보전관리	남해군		
24	서면 노구리	16	2	답	664	664	보전관리	김*룡	노구리 1161	
25	서면 노구리	17	1	도	403	403	보전관리	남해군		
26	서면 노구리	17	2	답	414	414	보전관리	김*룡	노구리 1161	
27	서면 노구리	19	1	도	52	52	보전관리	정*수	군포시 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981-1202	
28	서면 노구리	20	1	도	31	31	보전관리	곽*주	노구리 1219	
29	서면 노구리	21		답	1,736	1,736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	서면 노구리	23		임	545	545	농림지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	서면 노구리	24		답	102	102	생산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	서면 노구리	25		전	443	443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3	서면 노구리	35	1	답	426	426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4	서면 노구리	36		답	1,046	1,046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	서면 노구리	36	2	도	168	168	보전관리	최*룡	노구리 986	
36	서면 노구리	37		답	586	586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7	서면 노구리	37	1	도	115	115	보전관리	남해군		
38	서면 노구리	38		답	83	83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9	서면 노구리	39		답	14,608	14,608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0	서면 노구리	42		대	294	294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노구상수원보호구역 편입토지조사

연번	위 치	본번	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주 소	비고
41	서면 노구리	52		답	1,272	1,272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2	서면 노구리	52	2	도	212	212	보전관리	남해군		
43	서면 노구리	53		답	1,084	1,084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4	서면 노구리	53	1	도	296	296	보전관리	정*수	군포시 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981-1202	
45	서면 노구리	53	2	답	379	379	보전관리	정*수	군포시 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981-1202	
46	서면 노구리	54		대	278	278	보전관리	정*영	노구리 54	
47	서면 노구리	56		답	102	102	보전관리	정*수	안양시 안양동 688-17	
48	서면 노구리	57		답	1,174	1,174	보전관리	정*수	안양시 안양동 688-17	
49	서면 노구리	58		대	443	443	보전관리	남해군		
50	서면 노구리	59		임	205	205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	서면 노구리	228		임	155	155	농림지역	정*표		
52	서면 노구리	1417		천	50,807	5,076	보전관리	국(국토교통부)		
53	서면 노구리	산69	3	임	41,830	10,935	농림지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160	보전관리			
54	서면 노구리	산71	3	임	18,857	18,857	농림지역	류*중	노구리 833	
55	서면 노구리	산91		임	34,000	34,000	농림지역	의*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 76번길 32-14	
56	서면 노구리	산92		임	1,488	1,488	보전관리	김*경	노구리 1228	
57	서면 노구리	산93		임	60,793	60,785	농림지역	김*숙	설천면 감진로 425번길 9-1	
						8	보전관리			
58	서면 노구리	산93	1	천	1,799	1,799	보전관리	국(국토교통부)		
59	서면 노구리	산94		임	11,405	11,405	농림지역	정*임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516동204호	
60	서면 노구리	산95		임	20,331	20,331	농림지역	노구마을회	노구리 674-1	
61	서면 노구리	산96		임	34,512	34,512	농림지역	이*수	노구리 692	
62	서면 노구리	산97	1	묘	5,911	5,911	생산관리	중현리		
63	서면 노구리	산97	2	묘	7,841	7,841	생산관리	중현리		
64	서면 노구리	산98		임	514,887	514,887	농림지역	노구마을회	노구리 684	
65	서면 노구리	산98	1	임	402,501	402,501	농림지역	유포마을회	노구리 1301-4	
66	서면 노구리	산99	1	임	932,926	893,684	농림지역	김*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흥선로209번길 13, 813	
67	서면 노구리	산99	2	임	233,186	233,186	농림지역	유포마을회	노구리 1301-4	
68	서면 노구리	산99	3	임	1,260	1,260	농림지역	노구마을회	노구리 684	
69	서면 노구리	산100		임	55,140	55,140	농림지역	이*욱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36	
70	서면 노구리	산101	2	임	7,934	7,934	농림지역	최*금	노구리 1233	
71	서면 노구리	산102		임	595	595	보전관리	김*경	노구리 1228	
72	서면 노구리	산103		임	65,618	51,794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3	서면 노구리	산105		임	99	99	보전관리	이*세	서면 남서대로 2192번길 5	
74	서면 노구리	산106	2	임	805	805	보전관리	최*	부산 금정구 부곡동 329-13 코스빌에이-403	
75	서면 노구리	산106	3	임	10,250	9,136	보전관리	변*석	남해읍 북변동 301-6	
						1,114	농림지역			
76	서면 노구리	산106	4	도	362	362	보전관리	김*억	노구리 1227	
77	서면 노구리	산106	5	도	32	32	보전관리	고*태	노구리 812	
78	서면 노구리	산106	6	도	88	88	보전관리	남해군		
79	서면 노구리	산108	1	임	2,380	2,380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0	서면 노구리	산109	3	도	376	376	보전관리	남해군		

노구상수원보호구역 편입토지조사

연번	위 치	분번	부 면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주 소	비고
81	서면 노구리	산109	4	임	313	313	보전관리	정*영		
82	서면 노구리	산110	3	임	13,394	13,394	보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3	서면 노구리	산110	4	도	103	103	보전관리	김*명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68	
84	서면 노구리	산111	5	임	624	624	보전관리	최*배	노구리 979-1	
85	서면 노구리	산111	6	도	658	658	보전관리	최*배	노구리 979-1	
86	서면 노구리	산111	7	도	7	7	보전관리	최*배	노구리 979-1	
87	서면 노구리	산111	8	도	193	193	보전관리	최*배	노구리 979-1	
88	서면 노구리	산111	9	도	490	490	보전관리	윤*중	노구리 42	
89	서면 노구리	산111	10	임	86	86	보전관리	윤*중	노구리 42	
90	서면 노구리	산125		임	11,702	9,577	농림지역	신*	노구리 978	
						2,125	보전관리	신*	노구리 978	
91	서면 노구리	산126		임	11,008	5,101	농림지역	박*은	하동군 악양면 미정리 356	
						5,907	보전관리			
92	서면 노구리	산127		임	22,017	8,161	보전관리	박*은	하동군 악양면 미정리 356	
						13,856	농림지역			
93	서면 노구리	산128		임	36,198	36,198	농림지역	유포마을회	노구리 1301-4	

남해군 공고 제2019 - 256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남해군 서면 노구리 일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수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정거천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1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산95-2	1,080	2,178(양안)	교량 12개소, PC박스 223m	2019.02	2021.12.	재해 예방	토지 및 지장물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

1. 시행계획의 개요

소하천 명	사업 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 효과
	공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정거천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1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산95-2	1,080	2,178 (양안)	고량 12개소, PC박스 223m	2019.02.	2021.12.	9,184	재해 예방

2.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 개요
- 축제공 : 흙쌓기 9,017m³, 흙깎기 15,307m³, 터파기 6,585m³
- 호안공 : 전석쌓기 11,474m³, 석축쌓기 2,353m³
- 구조물공 : 슬라브교 12개소, PC박스 223m
- 하상보호공 : 낙차보 14개소, 전석깔기 1,950m²
- 배수공 : PE이중벽관(D400) 417m, 수문 3개소, PC맨홀 13개소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6,453m², 아스콘포장 545m²
- 부대공 : 1식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 예정일 : 2019년 2월
- 준공 예정일 : 2021년 12월

-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붙임1 참조
 -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바.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 사. 실시설계도서 : 열람서류 참조
- 아. 예정공정표 : 열람서류 참조
-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단위:백만원)

공 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비고
총사업비	9,184	300	482	810	1670	5,922	
국 비	4,592	150	241	405	835	2,961	
시 비	4,592	150	241	405	835	2,961	

- 차.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소하천 부속물에 대하여는 소하천 관리청(남해군 안전총괄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교량 및 기타 기반시설은 담당부서로 시설물 이관

카. 발생 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 해당없음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파.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3. 공람기간 : 2019. 2. 20. ~ 2019. 3. 6.(14일)

4. 공람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494)

5.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해 군 공 보

2019년 2월 28일

제 629 호 (5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의 조서

순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면적			잔여지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자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6 - 1	답	2,523	206-10			203	2,32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83	박금0		
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6 - 2	답	2,603	206-11			53	2,525	부산동래구 사직동 21-2	임순0 외 2인		
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6 - 2	답	2,603	206-12			25	2,525	부산동래구 사직동 21-3	임순0 외 2인		
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6 - 4	답	515	206-13			117	39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197번다길 33-3	정태0		
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6 - 5	답	1,537	206-14			184	1,353	413	류수0		
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6 - 7	답	1,868	206-15			139	1,72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부림리 1037-3	이순0		
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6 - 9	답	586	206-16			156	430	1051	박종0		
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8	도	1,089	208-1	1,013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9	구	1,296	209-1	6			1,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5 - 1	답	1,060	345-17			97	963	부산연제구 연산동 1873-62 한독아파트 2동 506호	박완0		
1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5 - 7	답	714	345-18			195	519	부산부산진구 개관동 53주공아파트 214-202	김덕0		
1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5 - 8	답	1,353	345-19			191	1,16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11	김정0		
1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5 - 11	답	2,036	345-20			179	1,85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40	이종0		
1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5 - 13	답	630	345-21			186	444	부산서상구 일곡동 699-2 일곡대원아파트 105-1801	김도0		
1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5 - 14	답	926	345-22			291	635	370	이덕0		
1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5 - 16	천	9			3		6	국	남해군		
1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7	도	431	347-1		337		9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8	구	7,821	348-1	256			2,0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8	구	7,821	348-2	3,383			2,0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8	구	7,821	348-3	2,152			2,0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9	도	382	349-3		9		276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49	도	382	349-4		97		276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50	답	1,945	350-2			14	1,706	507	하실0		
2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50	답	1,945	350-3			225	1,706	507	하실0		
2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50 - 1	천	37	350-4	15			22	국	남해군		
2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62	답	450	362-1			15	435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190번길 31, 101호 (외동)	김봉0 외 1인		
2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63	대	122	363-1			5	116	진주시 초진동 676-3 초진종합아파트 102-803	이원0		
2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63	대	122	363-2			1	116	진주시 초진동 676-3 초진종합아파트 102-804	이원0		
2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65 - 2	대	278	365-3			19	259	부산광역시 서구 서막로 11, 101동 402호(서대산동2기,대신차량아파트)	김달0		
3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71	답	615	371-1			11	60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5길 48, 312동 1004호 (상계동,주공아파트)	하상0		
3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73	답	651	373-1			132	519	서울강서구 화곡3동 1040-8	고재0		
3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75	답	340	375-1			289	51	375	장상0		
3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77	답	23	377-1			3	20		정찬0		
3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79	답	836	379-1			414	422	418	정몽0		
3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0	답	162	380-1			149	11	416	최수0		
3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0	답	162	380-2			2	11	416	최수0		
3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1	답	278	381-1			227	27	575-1	정학0		
3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1	답	278	381-2			24	27	575-1	정학0		
3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2	전	76	382-1			56	20	417	장순0		
4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3	전	132	383-1			33	99		장달0		
4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4 - 1	전	618	384-4			186	410	375	장상0		
4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4 - 1	전	618	384-5			22	410	375	장상0		
4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4	전	423	384-2			333	77	375	장상0		
4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4	전	423	384-3			13	77	375	장상0		
4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385	전	962	385-1			28	934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5, 에이동 910호(연산동,세연산아파트)	김주0 외 1인		
4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2	창	274	402-2			4	270	416	최기0		
4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2 - 1	전	311	402-3			5	306	416	최기0		
4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3	천	112	403-1			49	6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로 121번길 16-2	고옥0		
4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4	천	102	404-1			3	9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로 121번길 16-2	고옥0		
5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5 - 1	대	622	405-5			1	583	393	최분0		
5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5 - 1	대	622	405-6			38	583	393	최분0		
5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6	답	99	406-1			23	76	401	고주0		
5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7	답	13				13		417	장순0		
5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08	답	463	408-1			6	457	부산남구 수영동 437-1 현대아파트 102동 1405호	장원0		
5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11 - 1	도	33	411-4	2			31	국	남해군		
5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11	대	389	411-3			100	289	삼주면 상주리 938 금산빌라 201호	장성0		

남 해 군 공 보

(54)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순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권입면적			잔여지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14	대	592	414-1			30	562	413	류수오		
5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556 - 2	대	446	556-5			67	379	서울관악구 신림동 1624-19	고근오		
5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556 - 1	대	291	556-4			3	288	401	고주오		
6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556 - 3	대	17	556-6	1			16		남해군		
6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559 - 3	답	621	559-5			57	56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31-3	박원오		
6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561 - 1	답	926	561-3			7	886	998	정성오		
6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561 - 1	답	926	561-4			33	898	998	정성오		
6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96 - 6	도	101	896-8			17	84	994	정택오		
6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96 - 5	도	120	896-7			70	50	918-3	박민오		
6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96 - 4	도	97					97	994	우이오		
6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97	도	734	897-1	45			689	국	농림축산식품부		
6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98	도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6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899 - 1	도	83				79	4	1127	손연오		
7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900 - 3	도	97	900-4	39			58	국	남해군		
7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901	도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7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00 - 3	답	436	1000-4			29	40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31-3	박원오		
7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01	답	638	1001-1			78	56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례서로61번길 36, 103동 401호(비례동, 대양빌라)	이정오		
7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02	대	195	1002-1			11	184	1002	하엽오		
7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03 - 2	답	545	1003-5			33	512	1031	정배오		
7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17	답	810	1017-1			8	8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반로270번길 43-57(반여동)	송성오		
7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18	답	536	1018-1			6	5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반로270번길 43-57(반여동)	송성오		
7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18	답	536	1018-2			12	5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반로270번길 43-58(반여동)	송성오		
7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19 - 2	답	456	1019-3			169	287	부산광역시 금정구 온산로 8, - 401호(부곡동)	김해오		
8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0	답	126	1020-1			4	122	577	하준오		
8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1	답	218	1021-1			30	18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197번길 18	이문오		
8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2	답	364	1022-1			75	28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반로270번길 43-57(반여동)	송성오		
8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4 - 3	답	555	1024-4			52	503	부산 사하구 신령동 111-103	장효오		
84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5	답	433	1025-1			102	331	405	이연오 외 6명		
8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6	전	241	1026-1			42	199	1041	하정오		
8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7 - 4	전	228	1027-7			45	183	1041	하정오		
8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28	전	122	1028-1			12	110		이채오		
8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29 - 2	답	177		177				국	남해군		
8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29 - 1	답	66	1029-4	13			53	국	남해군		
9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29	답	911	1029-3			65	846	977	김종오		
9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30	전	139	1030-1			33	106	1031	정배오		
9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0 - 2	답	175		175				국	남해군		
9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0	답	545	1030-4			25	5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3길 9-10	김유오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길 28(진성지점)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9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0 - 1	답	85	1030-5	14			71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54길	이병오
9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031 - 3	대	717	1031-4			14	703	404	박홍오		
9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1 - 2	답	250		250				국	남해군		
9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1	답	581	1031-4			65	5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3길 9-10	김유오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길 28(진성지점)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9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1 - 1	답	81	1031-5	12			69	국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54길	이병오
9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2	답	808	1032-3			191	6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3길 9-10	김유오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길 28(진성지점)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10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2 - 1	답	45		45				국	남해군		
10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 - 3	대	185	1033-11			51	134	1033-3	김천오		
10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 - 2	대	324	1033-10			71	253	1143-3	장거마을회		
10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 - 1	대	96	1033-9			50	46	1111	서달오		
10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 - 4	대	18	1033-12			8	10	1035	정태오		
10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 - 5	대	100	1033-13			73	27	1033-5	정영오		
10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4 - 7	대	74	1034-19			11	63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117-21 -202	홍순오		
10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4 - 2	대	161	1034-18			82	7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66	박정오		
10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7 - 1	대	176	1037-28			26	150	1038	박대오 외 1인		
10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7 - 14	대	226	1037-29	2			224	국	남해군		
11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8 - 1	대	122	1038-40			17	1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5, 1406호(신촌동, 삼부르내성스파크)	박대오		

남해군공보

순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관입면적			잔여지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자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1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40	천	63	1040-1	20			43	국	남해군		
11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41	천	60	1041-1	55			5	국	남해군		
11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47 - 10	천	20	1047-13	14			6	국	남해군		
11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47 - 11	천	4	1047-14	1			3	국	남해군		
11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48 - 1	천	28	1048-2	13			15	국	남해군		
11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49	창	83	1049-2			1		1131-10	양두오		
11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49 - 1	답	53	1049-3	39			14	국	남해군		
11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50	답	2,972	1050-2				99	2,873	1478	박창오	
11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92 - 1	답	1,501	1092-3				104	1,39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92-1	박종오	
12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92 - 2	도	112	1092-4				1	111	1069	박태오	
12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93 - 1	천	29		29					국	남해군	
12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93	답	1,075	1093-2				343	732	1476	박영오	
12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94 - 1	도	119					119		133-6	임창오	
12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95 - 1	천	485		485					국	남해군	
12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1 - 1	답	220	1101-2	196			24	국	남해군		
12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2	답	60	1102-3	46			14	국	남해군		
12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 - 2	도	5,260	1103-22	69			5,174	국	국토교통부		
12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 - 2	도	5,260	1103-23	17			5,174	국	국토교통부		
12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 - 8	답	557	1103-24				5	552	918-3	박민오	
13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 - 10	답	1,403	1103-25				87	1,316	954	이종오	
13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 - 11	답	1,611	1103-26				117	1,494	994	우이오	
13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 - 12	답	2,851	1103-27				212	2,639	994	이영오	
13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 - 13	답	1,313	1103-28				128	1,185	994	이영오	
13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 - 21	답	904	1103-29	73			831	국	경상남도		
135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06 - 6	도	84	1106-10	46			38	국	국토교통부		
136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06 - 4	도	329		329				국	국토교통부		
137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13	천	7,926		3,643			4,283	국	국토교통부		
13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13 - 3	천	1,148		872			276	국	국토교통부		
139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20	도	717	1120-1	12			255	국	국토교통부		
14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20	도	717	1120-2	56			255	국	국토교통부		
14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20	도	717	1120-3	2			255	국	국토교통부		
14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20	도	717	1120-4	349			255	국	국토교통부		
14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120	도	717	1120-5	43			255	국	국토교통부		
14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4 - 2	대	427	1124-4				93	334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210동 1804호 (최명동, 최명동대림타운)	민말오	
14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5 - 2	대	63	1125-3				47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이동면 무림리 90번길 18	박종오	
14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6 - 2	대	99		99					국	남해군	
14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6 - 4	대	4		4					국	남해군	
14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6 - 3	도	9					9		서울 중로구 부암동 241-2 자하문연립 1층 4호	김영오	
14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7 - 14	도	4					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12,910호 (신우보람아파트)	박석오	
15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7 - 5	대	38	1127-15				22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12,910호 (신우보람아파트)	박석오	
15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7 - 13	대	2					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12,910호 (신우보람아파트)	박석오	
15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7 - 11	도	9	1127-16				6	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12,910호 (신우보람아파트)	박석오	
15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28 - 6	도	21	1128-18	11			10	국	남해군		
15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40	잡	5,861	1140-5	17			5,784	국	남해군		
15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40	잡	5,861	1140-6	60			5,784	국	남해군		
15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57 - 1	도	75		75				국	경상남도		
15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1	답	2,002	1171-1	28			1,974	국	남해군		
15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2	답	1,305	1172-3	49			1,256	국	남해군		
15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4 - 1	도	3,989	1174-2	178			3,811	국	국토교통부		
16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5 - 9	답	19					1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5	정영오	
16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5 - 16	답	40		40				국	남해군		
16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5 - 8	답	684	1175-17				17	65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5	정영오	
16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5 - 8	답	684	1175-18				13	65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3-5	정영오	
16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5 - 15	답	2		2				국	남해군		
16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5 - 14	답	2		2				국	재무부		
16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5 - 12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16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79	도	72	1179-1	14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남 해 군 공 보

(56)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순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면입면적			잔여지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자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339	구	4,840	1339-1	66			4,774	국	농림축산식품부		
16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343	구	2,044	1343-1	8			2,036	국	농림축산식품부		
17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1366 - 1	도	659		659				국	남해군		
17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366 - 2	답	112				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32가길 20, 102호 (신림동)	박상오 외 1인		
17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 - 15	천	74	1422-25	64		10		국	남해군		
17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 - 4	답	1,769	1422-22			37	1,732		977	김종오	
17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 - 12	천	3			3			국	남해군		
17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 - 7	답	763	1422-23			110	65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1000-1	박종오		
17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 - 8	답	1,647	1422-24			153	1,494		980	강숙오	
17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 - 17	천	2			2			국	남해군		
17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 - 16	천	8		8				국	남해군		
17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22 - 19	대	531	1422-26			152	37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삼일로 482번길 18-26	이막오		
18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0	답	1,937	1440-1			122	1,81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림로 95번길 30	조영오		
18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3	답	391	1443-1			110	281		1088	박상오	
18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4	답	525	1444-1			32	493		1485	박두오	
18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5	답	1,537	1445-1			101	1,43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90번길 49-8	박수오		
18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6	답	1,648	1446-1			59	1,589		975	박상오	
18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7	답	742	1447-1			77	665		975	박상오	
18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8	답	852	1448-1			82	770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25, 1동 609호(장림동, 우림그린맨션)	김종오		
18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9	답	1,158	1449-1			106	1,05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88번길 19-6	박응오		
18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1	답	1,813	1451-1			131	1,682	석평리	418	정종오	
18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2	답	1,810	1452-1			132	1,67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90번길 49-8	박수오		
19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3	도	394	1453-1	92			302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4 - 1	답	1,510	1454-6			133	1,37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90번길 35-1	강영오		
19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4 - 2	답	1,564	1454-7			133	1,431	통영시 인평동 423-8	303	김정오	
19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4 - 3	답	1,570	1454-8			111	1,459	통영시 인평동 423-8	303	김정오	
19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4 - 5	답	604	1454-9			97	507		975	박상오	
19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7 - 1	도	625	1457-2	573			52	국	남해군		
19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58	도	174		174				국	농림축산식품부		
19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62	답	93	1462-1			41	52		1476	박영오	
19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63	천	142	1463-1			32	11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77	김진오		
19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64 - 1	대	1,078	1464-3	19			1,059	국	산림청		
20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65	답	509	1465-1			72	437		1657-5	김만오	
20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66 - 2	대	331	1466-5			72	259	진주시 상대동 311-115	박동오		
20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66 - 1	답	407	1466-4			27	380	진주시 상대동 311-115	박동오		
20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67	대	440	1467-1			31	409	진주시 상대동 311-115	박동오		
20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68	천	86	1468-1			1	85		1069	박동오	
20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92 - 1	답	276	1492-3			47	229		1082	박창오	
20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92	대	365	1492-2			11	354		1492	박창오	
20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94	창	608	1494-1			24	584		1079	박주오	
20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95	답	529	1495-1			12	51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73	박주오		
20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95	답	529	1495-2			1	51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73	박주오		
21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96	답	592	1496-1			54	538		1485	박달오	
21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97	총	705	1497-2			22	683	부산 남구 대연동 1752-2	개인법인(대원해수공업(주)경남노유지재단)		
21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02	천	13,303		6,704			6,599	국	국토교통부		
21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05	도	99	1805-1	49			50	국	국토교통부		
21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06	도	1,742	1806-7	238			1,500	국	국토교통부		
21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06	도	1,742	1806-8	4			1,500	국	국토교통부		
21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11	도	688		688				국	국토교통부		
21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76	도	1,536	1876-1	35			1,501	국	국토교통부		
218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산174	임	4,846				4	4,842		507	허정오	
21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271	임	446	산271-2			3	443		1137-3	허종오	
220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산80 - 1	임	94	산80-2			3	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일로 147번길 11, 3동 511호(반여동, 창신아파트)	김영오		
221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산96	임	11,107	산96-1			138	10,96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23 테와 현대 아파트 208-2302	박상오		
222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산98	임	9,421	산98-1			4	9,417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518-1 403호	허재오		
				221,690				24,609	-	10,446	171,193		

남해군 공고 제 2019-265 호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시책일몰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 및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몰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남해군의회장의 일몰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남해군 일몰시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3월 1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2,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국은 국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269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근거한 조례 규정 사항이 부합되지 않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이름을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수정

나. 상위법령이 규정한 사항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제6조)

- 복지관의 위탁내용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관련규정 수정
-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의 중복으로 해당조항 삭제

다. 준용 규정을 관련 조례에 해당하도록 상위법령 삭제(제11조)

- 준용규정이 상위법령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령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832, 팩스 860-3882, e-mail : cho7105@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이름 중 “설치” 를 “관리”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복지관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그 밖의”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3항부터 제6조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를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복지관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 5. (생략)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p>	<p>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p>
<p>제6조(관리 및 운영)</p> <p>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노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p>	<p>제6조(관리 및 운영)</p> <p>① 군수는 복지관을 관리·운영한다.</p> <p>②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 ④ <삭제></p>

<p><u>할 수 있다.</u></p>	
<p>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u>제6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u> 2. ~ 3. (생략)</p>	<p>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u>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u> 2. ~ 3. (현행과 같음)</p>
<p>제11조(준용) <u>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p>제11조(준용) <u>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p>

남해군 공고 제 2019 - 278 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명)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소하천명		금장천	
공사 (점용·사용)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2098-2		
	면적	5.9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19. 3. 1. ~ 2019. 6. 31.		
	목적 및 사유	지방도 1024호선 두곡지구 배수시설 정비공사		

남해군 공고 제 2019 - 279 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경상남도도로관 리사업소진주지 소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소하천명		석교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1533-1		
	면적	5.9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19. 3. 1. ~ 2019. 6. 31.		
	목적 및 사유	지방도 1024호선 두곡지 구 배수시설 정비공사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21호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두는 팀장의 직급 및 직렬(제2조 제2항 관련)

부서명	팀 명	팀장의 직급 및 직렬	비 고
기획예산 담당관	정책기획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예산팀	지방행정주사	
	홍보팀	지방행정주사	
	감사팀	지방행정주사	
	법무규제개혁팀	지방행정주사	
관광진흥 담당관	관광마케팅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관광개발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관광축제팀	지방행정주사	
	관광시설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행정과	행정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군민소통팀	지방행정주사	
	후생팀	지방행정주사	
	인구정책팀	지방행정주사	
	정보전산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통신관계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	
민원 봉사과	민원행정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지적관리팀	지방시설주사	
	지적정보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부동산등록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주무팀
	노인복지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통합조사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희망복지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장애인복지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여성보육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장사행정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재무과	부과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무팀

남 해 군 공 보

2019년 2월 28일

제 629 호 (71)

	경리팀	지방행정주사	
	재산관리팀	지방행정주사	
	세입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재산세팀	지방세무주사	
	청사신축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설
문화 청소년과	문화예술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문화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평생학습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교육청소년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드림아동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역 활성과	지역경제팀	지방행정주사	
	일자리창출팀	지방행정주사	
	투자유치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친환경에너지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도시재생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역개발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환경 녹지과	환경정책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주무팀
	폐기물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지도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시설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공원관리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산림조성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산림보호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해양 수산과	수산기획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주무팀
	어업지도팀	지방해양수산주사	
	양식산업팀	지방해양수산주사	
	연안관리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해양보전팀	지방해양수산주사	
	수산자원팀	지방해양수산주사	
도시 건축과	도시계획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주무팀
	경관디자인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건축민원팀	지방시설주사	
	복합민원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건축지도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남 해 군 공 보

(72)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건설 교통과	건설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주무팀
	농업기반팀	지방시설주사	
	도로팀	지방시설주사	
	교통지도팀	지방행정주사	
안전총괄 과	안전기획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방재복구팀	지방시설주사	
	민방위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하천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보건소	보건행정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주무팀
	건강생활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방문보건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예방의약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위생안전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치매예방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무팀
	귀농귀촌팀	지방농촌지도사	
	유통지원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축산정책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가축방역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농촌활력 과	지도기획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무팀
	농촌체험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농촌자원팀	지방농촌지도사	
	농기계관리팀	지방농촌지도사	
농업기술 과	환경농업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무팀
	식량작물팀	지방농촌지도사	
	원예작물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마늘팀	지방농촌지도사	
체육시설 사업소	체육시설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스포츠마케팅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레포트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상하수도 사업소	관리운영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상수도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하수도팀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의회사무과	의사팀	지방행정주사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실과·직속기관·사업소에 두는 팀장의 직급 및 직렬(제2조 제2항 관련)

현 행				개정안			
부서명	팀 명	팀장의 직급 및 직렬	비 고	부서명	팀 명	팀장의 직급 및 직렬	비 고
재무과	부과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무팀	재무과	부과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무팀
	경리팀	지방행정주사			경리팀	지방행정주사	
	재산 관리팀	지방행정주사			재산 관리팀	지방행정주사	
	세입 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세입 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재산세 팀	지방세무주사			재산세 팀	지방세무주사	
						<u>청사 신축팀</u>	<u>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u>